주요 전기요금제도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2부 요금제
동·하계 최대수요전력 연동 기본요금 부과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주택용전력 요금 누진제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복지할인 요금제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아파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은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어 설비규모가 크고, 엘리베이터·난방설비 등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방법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전기사용계약 방법을 결정하며, 순수 주거부분의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일 경우에는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되 고객(기설 고압공급아파트는 입주자 전원)이 희망할 경우 호별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열병합 발전설비가 있는 고압아파트는 단일계약 방법으로만 공급하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방법(이에 준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 포함)에 의해 공급하지 않습니다.)

호별계약 : 아파트의 독립된 각 1호에 대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고객에게 적용
단일계약 :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종합계약 : 종합계약 방법이란 아파트 1구내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계약방법별 특징

구분	호별계약	단일계약·종합계약
수전설비	한전 소유	아파트 소유
설비유지관리	한전 시행	아파트 시행
공급전압	저압(220V~380V)	고압(22,900V)
사용량검침	한전 시행	아파트 관리주체 시행 (한전에서 검침수수료 지급)
전기요금청구	세대별 청구	아파트별 청구 (세대별 요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산정하여 관리비로 청구)

고압아파트 요금계산 예시

[사용예시]
계약전력 270kW, 세대수 10세대, 공급전압 22.9kV
최대수요전력 현황 : 요금적용전력 100kW('17.12월 시현)

년월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8.01	'18.02

년월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8.01	'18.02
Peak	95	95	94	90	91	72	66	87	91	100	85	95

월간('15년 2월) 전체 APT 전기사용량 : 3,000kWh

세대별 사용량 : 2,340kWh

세대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	계
사용량 (kWh)	150	180	220	210	310	300	270	190	250	260	2,340

단가 : 2016.12.01 시행단가 적용

① '종합계약'의 경우 : 505,922원

ⓐ 세대별 요금계산 : 259,984원(주택용 저압요금 적용)

세대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	계
사용량 (kWh)	150	180	220	210	310	300	270	190	250	260	2,340
요금 (원)	10,905	13,704	24018	22139	40929	39,050	33,413	14,637	29655	31,534	259,984

ⓑ공동사용설비 요금계산 : 일반용(갑)Ⅰ 고압A 적용(선택 II 요금인 경우)

공동설비 사용량 : 660kWh[3,000kWh(전체사용량)-2,340kWh(세대별사용량)]

요금적용전력 : 22kW[100kW(요금적용전력) × (660kWh/3,000kWh)]

요 금 : 245,938원

기본요금 : 22kW × 8,230원/kW = 181,060원

사용량요금 : 660kWh × 98.3원/kWh(15년 2월 = 겨울철 요금) = 64,878원

전기요금 계 : ⓐ259,984원 + ⓑ245,938원 = 505,922원

② '단일계약'의 경우 : 316,500원(주택용 고압요금 적용)

평균사용량 : 300kWh(3,000kWh/10세대)

ⓒ기본요금 : 12,600원

1,260원(평균사용량 300kWh에 해당하는 월간 기본요금) × 10세대

ⓓ전력량요금 : 303,800원

1단계 요금 : 200kWh × 78.30원/kWh × 10세대 = 156,600원

2단계 요금 : 100kWh × 147.30원/kWh × 10세대 = 147,300원

전기요금 계 : ⓒ12,600원 + ⓓ303,900원 = 316,500원

주택용전력 요금표

적용일자 : 2016년 12월 1일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사용량 구간	저압	고압	사용량 구간	저압	고압
200kWh이하사용	910	730	처음200kWh까지	93.9	78.3
201~400kWh사용	1600	1260	다음 200kWh까지	187.9	147.3
400kWh 초과사용	7,300	6,060	400kW 초과	280.6	215.6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신청방법 : 관할지사에 문서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아파트 현황(동별호수 내역) 등

요금적용

단일계약⇒종합계약 :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사일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신청한 계약방법을 적용

종합계약⇒단일계약 :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을 적용

계약방법 변경의 제한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약아파트 공용분 요금 할증제도

종합계약아파트 공용분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형 설비 증가로 인한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하여 '07.4월부터 공용분요금 할증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 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요금적용기준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전력량요금 적용기준	비고
200kWh이하	현행과 같음 (할증 없음)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이 300kWh이하인 고객은 겨울철(11~4월분) 할증 적용 제외
201~300kWh	요금단가의 200% (100% 할증)	
301~500kWh	요금단가의 300% (200% 할증)	
500kWh 초과	요금단가의 500% (400% 할증)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은 총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을 호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부과합니다.